

『e-플러스 정기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1.11.29 현재,세전)

구 분	내 용	
상품특징	가입한도 제한 없는 비대면 채널 전용 거치식 예금 상품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	
가입기간	1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(일 단위)	
가입금액	1만원 이상	
기본금리	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 기간별 기본 금리 적용 (2021.11.29 현재, 세전)	
	기간	월이자지급식 / 만기일시지급식
	1개월 이상	연 0.25% / 연 0.35%
	6개월 이상	연 0.45% / 연 0.55%
	1년 이상	연 0.60% / 연 0.70%
	2년 이상	연 0.65% / 연 0.75%
3년	연 0.75% / 연 0.85%	
일부해지	○	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(월이자지급식은 불가, 일부해지 후 잔액 1만원 이상 유지)
세제혜택	○	가입 자격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
예금담보대출	○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
예금자보호	○	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
중도해지 금리	기간	중도해지금리
	1개월 미만	연 0.10%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
	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
(주 1) 차등률 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- 6개월이상~9개월미만 경과 시 60% 적용, 9개월이상~11개월미만 경과 시 70% 적용, 11개월이상 경과 시 90% 적용 (주 2) 경과율 : 경과일수/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 시 1.564%로 적용		
만기후 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 일반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/2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 일반 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/4 	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『e-플러스 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: 『e-플러스 정기예금』
- 상품특징: 금액 제한 없이 간단하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거치식 예금 상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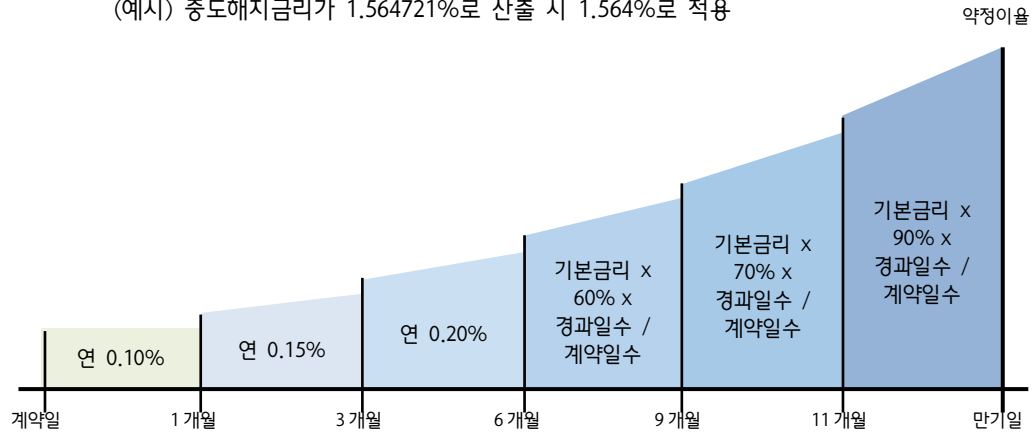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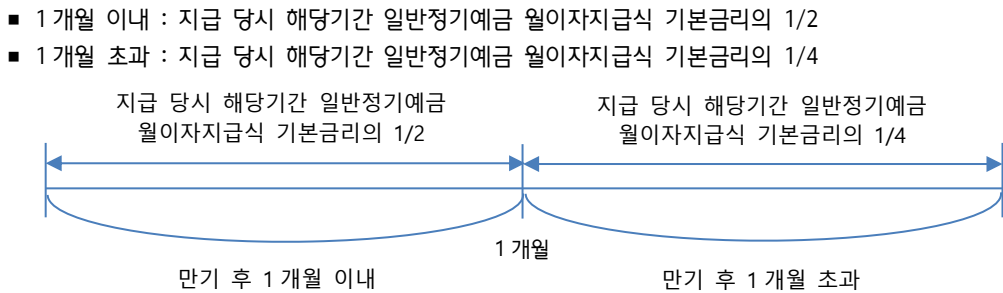
(2021.11.29 기준, 세전, 연이율)

구 분	내 용						
가 입 대 상	실명의 개인	상 품 유 형		정기예금			
거 래 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: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고객센터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 						
계 약 기 간	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일 단위로 가입 가능						
가 입 금 액	1만원 이상 원단위로 가입 가능					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해지시 이자를 지급 월이자지급식 :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						
기 본 금 리	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 별 기본 금리 적용						
	(2021.11.29 현재, 세전)						
	기간	1개월이상	3개월이상	6개월이상	1년이상	2년이상	3년
	월이자지급식(세전)	연 0.25%	연 0.25%	연 0.45%	연 0.60%	연 0.65%	연 0.75%
	만기일시지급식(세전)	연 0.35%	연 0.35%	연 0.55%	연 0.70%	연 0.75%	연 0.85%
우 대 금 리	이 예금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고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.1%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						
이자계산방법	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						
중도해지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금액에 대하여 신규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 (원미만 절사) 						
	기간	중도해지금리					
	1개월 미만	연 0.1%				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				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%					
6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% 미만 시 연 0.2% 적용)						

- (주 1) 차등을 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을 참고
 - 6개월이상~9개월미만 경과 시 60% 적용, 9개월이상~11개월미만 경과 시 70% 적용, 11개월이상 경과 시 90% 적용
- (주 2) 경과율 : 경과일수/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
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
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 시 1.564%로 적용



만기 후 금리


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

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(일부해지 포함)
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

일부 해지

- 만기 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, 일부 해지금액은 중도해지금리로 적용합니다.
 (단, 일부 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.)
-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.

세제 혜택 (개인, 개인사업자)

-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범위 내),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
-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계약해지방법

- 영업점,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
 ※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
-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(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) 하며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

연계·제휴서비스

해당 사항 없음

통장발행

통장 미발행 가능

양도 및 담보 제공




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

휴면예금 및 출연

- 예금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
-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<p>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1), 고객의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		
예금자보호여부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 해당  </td> <td>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 </td> </tr> </table>	해당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
해당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		

3 유의사항

-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체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•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